

# 2022. 11. 8. 보도 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

## 제 목 : 11월 변론 안내

- 헌법재판소는 오는 11. 10.(목) 14: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연 번	사건번호 및 사건명	제청법원/ 제청신청인 (대리인)	이해관계인 (대리인)	비고
1	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	서울서부지방법원/ 박○○ (류민희 외 3)	질병관리청장 (정부법무공단)	

붙임 :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. 끝

# 보도자료

##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(HIV)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

[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]

### [ 공개 변론 ]

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10일(목) 14:00 대심판정에서, 2019. 12. 4.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.

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(HIV)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, 제25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,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과잉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내지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.

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.



2022. 11. 8.
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## □ 사건개요

-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(Human Immunodeficiency Virus, 약칭 ‘HIV’)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이다.
-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).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(같은 법 제25조 제2호).
-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숨긴 채 콘돔 사용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.<sup>1)</sup> 제청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, 제25조 제2호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나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9. 12. 4. 직권으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.

## □ 심판대상

- 이 사건 심판대상은 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’(2013. 4. 5.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, 이하 ‘에이즈예방법’이라 한다) 제19조, 제2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.

### [심판대상조항]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2013. 4. 5.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)

제19조(전파매개행위의 금지)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2.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

## □ 당해사건 피고인측 주장 요지<sup>2)</sup>

- ‘체액’, ‘전파매개행위’는 너무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.

1) 상대방에게 HIV 감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.

2) 대리인 변호사 한가람, 류민희, 박한희

-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, 체내 HIV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없다.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성 접촉을 콘돔 사용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여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하는 등,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.
- 국제기구(유엔에이즈)·보건전문가들은 HIV 전파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이 HIV 전파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
- 법정형이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인 것은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내지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다.

### □ 이해관계인 질병관리청장 의견 요지<sup>3)</sup>

- ‘체액’, ‘전파매개행위’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,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.
- PrEP, PEP 등의 요법이나, 감염인에 대한 치료(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)등은 모두 그것만으로는 감염예방에 한계가 있다.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법정형이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인 것은 중상해죄가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나, 결핵의 경우 치료가능성 내지 신체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으므로 과잉형벌이라거나 평등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.

### □ 주요 쟁점

- 전파매개행위죄의 구성요건이 ‘체액’, ‘전파매개행위’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
-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
-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감염병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

3)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, 기영조

## ■ 참고인 의견요지

- 참고인 :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 과장(당해사건 피고인측)  
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(이해관계인 측)
  
- 참고인 최재필의 의견요지
  -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‘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’이 있는 것이 아니라 ‘감염가능성이 없음’으로 드러남. 그런데 실제 법 집행 실무는 ‘전파가능성이 0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’는 이유로 위의 감염가능성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함.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인 ‘전파가능성 0’을 근거로 감염인의 모든 전파매개행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  - 전파매개행위의 범죄화 정책을 유지하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검사, 치료를 오히려 저해함
  -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 법제는 현재 의과학적 사실과 맞추어 정합적이지 않은 수단을 택하며, 오히려 HIV 예방정책과 관련된 공중보건 지표 개선에 악영향을 줌
  
- 참고인 박재평의 의견요지
  -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,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함
  -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상의 전파도 단순히 전파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,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전파매개행위 일반이 아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예측가능함
  - 심판대상조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